

가정보육시설의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가정보육이 가지는 장점은 가정이라는 친숙한 환경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의 가정보육시설은 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 이외에는 가정보육시설의 고유기능과 장점을 살리는 등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취약하고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으며, 설치 신고시 정원 배정 이외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조건은 빈번한 시설 개·폐원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보육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徐文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영유아보육법은 가정보육시설을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아동을 5명에서 20명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보육이 가지는 장점은 가정이라는 친숙한 환경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의 가정보

육시설은 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 이외에는 가정보육시설의 고유기능과 장점을 살리는 등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설치 및 폐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 장기적 차원에서의 질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전문성 및 자질 면에 있어서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보육인력의 질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 있고, 장기적 차원에서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고는 보육유형 중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정보육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 가정보육의 현황

1) 가정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가정보육시설은 민간개인보육시설과 더불어 민간 위주의 우리 나라 보육시설 구조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 받고 있는 아동수는 2000년 3월말 현재 75,91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수 685,674명의 11.1%를 차지한다. 민간개인보육시설의 보육아동수 비율 47.6%에 비교하면 약 1/4 정도이다. 시설당 정원은 15.2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11.2명이다(표 1 참조). 한편 보육아동수를 보육정원 기준으로 보는 이용률은 가정보육시설은 72.4%로 전체 평균 86.6%, 민간개인시설 86.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3세 미만아 비율은 31.9%로 다른 보육시설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3세 미만아 비율은 22.8%이다(표 2 참조).

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특성을 보면, 취업모의 아동이 75.0% 수준으로 평균 보육시간은 9시간이며, 비취업모의 아동은 6시간 14분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또한 전체 보육아동의 30.4%가 6시간 미만의 반일반 보육 아동이다.

표 1. 보육아동 정원 대비 현원율(2000년 3월말 현재)

(단위: 명, %)

구분	전체	가정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개인	직장
시설수(A)	19,335	6,780	1,286	1,983	314	8,752	220
현 원(B)	685,674	75,913	104,380	153,325	17,826	326,596	7,634
시설당 현원(B/A)	35.5	11.2	81.2	77.3	56.8	37.3	34.7
시설당 정원 ¹⁾	41.1	15.2	82.2	87.3	54.7	44.0	45.0
정원 대비 현원율 ¹⁾	86.6	72.4	94.9	89.4	88.7	86.8	82.5

주: 1) 1999년 9월 기준임.

자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URL://www.educare.or.kr.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표 2. 시설유형별 보육아동 연령(1999년 9월 현재)

(단위: 명, %)

연령	전체(A)	가정(B)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민간개인	B/A
0~1세	45,593 (7.0)	9,029 (12.3)	7,435 (7.4)	6,794 (4.4)	949 (7.5)	589 (7.9)	20,797 (6.8)	19.8
2세	97,145 (14.8)	14,416 (19.6)	15,366 (15.4)	19,633 (12.7)	1,953 (15.5)	1,205 (16.2)	44,572 (14.5)	14.8
3세 이상	512,646 (78.2)	50,128 (68.1)	77,097 (77.2)	127,809 (82.7)	9,703 (77.0)	5,627 (75.9.)	242,282 (78.8)	9.8
계	655,384 (100.0)	73,573 (100.0)	99,898 (100.0)	154,236 (100.0)	12,605 (100.0)	7,421 (100.0)	307,651 (100.0)	11.2

주: ()안은 전체 보육아동수에 대한 백분을 분포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표 3. 보육아동의 연령 및 모의 취업여부별 보육시간

보육 시간	아동연령					모의 취업여부		전체
	2세 미만	2세	3세	4세	5세 이상	취업	비취업	
평균 (N)	9시간 6분 (347)	8시간 21분 (543)	8시간 7분 (501)	8시간 13분 (247)	7시간 33분 (149)	9시간 (1,329)	6시간 14분 (415)	8시간 22분 (1,779)

자료: 서문희·이상한·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가정보육시설의 물리적·구조적 환경

(1) 장소

〈표 4〉는 가정보육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조사대상 시설의 40.0%가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이 근린시설인 상가건물 30.7%, 단독주택 22.3%, 연립주택 7.0% 순서로 조사되었다.

설치 층수는 조사대상 시설의 64.4%는 1층에 있고, 29.4%는 2층에, 그리고 6.2%의 시설이 3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특성별로는 상가건물에 설치

되어 있는 시설은 28.8%만이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37.8%는 별도의 단독공간에서 설치되어 있고, 62.2%가 살림집 겸용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

(2) 규모

가정보육시설의 규모는 20~29평, 30~39평이 각각 39.2%, 31.5%이고, 20평 미만의 시설은 13.3%이며, 전체 평균은 28.4평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의 수는 3개 43.8%, 4개 이상 35.4%이고, 2개인 시설은 20.8%이었다.

표 4. 가정보육시설 설치 층수

(단위: %)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연립주택	계
백분율		40.0	22.3	30.7	7.0	100.0
층수	1층	88.3	68.9	28.8	69.2	64.4
	2층	7.8	26.7	62.7	30.8	29.4
	3층 이상	3.9	4.4	8.5	-	6.2
단독시설 여부	단독시설	32.4	35.6	49.2	23.1	37.8
	시설장 살림집 겸용	67.6	64.4	50.8	76.9	62.2
계 (N)		100.0 (86)	100.0 (48)	100.0 (66)	100.0 (15)	100.0 (216)

자료: 서문희·이상헌·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5. 시설형태별 보육시설 규모

(단위: %)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연립주택	계
평수	20평 미만	6.5	20.9	14.3	25.0	13.3
	20~29평	42.9	39.5	28.6	58.3	39.2
	30~39평	36.4	20.9	38.8	8.3	31.5
	40평 이상	14.3	18.6	18.4	8.3	16.0
	평균(SD)	30.0(7.8)	26.1(8.5)	28.9(10.6)	24.2(6.7)	28.4(9.0)
보육실수	2개	5.4	22.2	39.3	25.0	20.8
	3개	44.6	50.0	35.7	58.3	43.8
	4개 이상	50.0	27.8	25.0	16.7	35.4
계(N)		100.0(86)	100.0(48)	100.0(66)	100.0(15)	100.0(216)

자료: 서문희·이상헌·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가정보육시설이 단독주택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및 일부 연립주택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마당을 갖기가 어렵는데, 조사대상 시설 중 마당을 가지고 있다는 시설은 25.5%에 불과하였다.

(3) 인력 구성

가정보육시설의 인적 구성을 보면 시설장 혼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율이 27.0%이고, 시설장이 보육교사 1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32.4%로 가장 많았으며,

17.0%가 보육교사 2명 이상을 두고 있고, 보육교사 1인과 종사자를 두고 있는 비율은 9.4%, 보육교사 2인과 종사자를 두고 있는 비율은 4.5%, 종사자만 두고 있는 경우는 9.7%이었다(표 6 참조).

표 6. 시설 보육인력 구성
(단위: %)

구 분	백분율
시설장	27.0
시설장+보육교사 1명	32.4
시설장+보육교사 2명 이상	17.0
시설장+보육교사 1명+기타 종사자 1명 이상	9.4
시설장+보육교사 2명 이상+기타 종사자 1명 이상	4.5
시설장+기타 종사자 1명 이상	9.7
계 (N)	100.0 (216)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가정보육시설의 문제점

1) 가정보육시설의 위상 및 기능 미정립

가정보육시설의 문제는 첫째, 규모나 설치 장소 면에서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규모를 보면 정원은 15명, 현원은 평균이 11명 이상이고, 시설장의 살림집이 아닌 별도의 장소인 경우가 37.8%이고, 또한 30.7%의 놀이방은 상가에 설치되어 있으며, 35.6%는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다. 외국의 가정보육은 대부분이 보육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반면(보건복지 포

럼 6·7월호 참조), 우리 나라의 가정보육은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곳이 반드시 보육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조건이 없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1990년대 사회적·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된 우리 정부의 보육확충 정책과 더불어 가정보육시설의 설치조건이 완화되고 규모도 점차 확대되도록 제도 자체가 변질되어 오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¹⁾

둘째, 가정보육시설이 타유형의 시설에 비하여 영아보육과 연장형 보육의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 이외에는 타보육시설과의 기능적 차별화가 분명하지 않다.

셋째, 파출부나 이웃탁아모에 의한 보육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998년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의 0.78%인 38,640명이 파출부, 이웃사람 및 가정부에 의하여 보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보육 인력 자격 및 구조의 취약

보육교사교육원 수료후 2급보육교사 자격만 가지면 아무런 경력이나 조건 없이 바로 가정보육시설을 개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격조건은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의 46.9%가 2급보육교사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1) 가정보육시설의 규모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해져 있었으나, 1994년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되었고, 1996년에 다시 20명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음.

표 7. 시설장 자격 백분율 분포

(단위: %)

자 격	시설장	1급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기타	계(N)
시설장	7.4	21.7	46.9	21.1	2.9	100.0(214)

자료: 서문희·이상헌·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8.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등급 분포(1999년 9월 현재)

(단위: %)

구 분	계	가정	국공립	법인	단체	개인	직장
1급	52.4	29.4	68.7	46.4	58.2	46.0	68.1
2급	47.6	70.6	31.3	53.6	41.8	54.0	31.9
계 (N)	100.0 (39,815)	100.0 (4,014)	100.0 (6,354)	100.0 (798)	100.0 (13,282)	100.0 (14,802)	100.0 (56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9.

표 9. 지난 1년간 교육 이수 비율

(단위: %)

구 분	시설장(N=216)	보육교사(N=214)
시·도 주관 보수교육	28.1	16.1
세미나·워크숍 등 기타 교육	20.9	12.9
둘 다	6.1	3.2
두 가지 중 하나 이상	43.8	25.8
교육을 받지 않음	56.2	74.2

자료: 서문희·이상헌·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가정보육시설은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이 29.4%이고 2급보육교사의 비율이 70.6%인데, 이는 전체 보육교사의 등급별 구성이나 타시설의 등급별 구성에 비하여 2급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아서 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표 8 참조).

또한 보수교육 등 교육기회도 충분하게 확

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보수교육을 포함한 교육 이수여부에 대하여 시설장의 28.1%와 보육교사의 16.1%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았고, 세미나·워크숍 등 기타 교육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20.9%와 보육교사의 12.9%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보수교육 및 기타 교육을 모두 통 털어서 1년 동안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표 10. 6개월간 가정보육시설의 개·폐 신고(1999년 4~9월)

(단위: 개소, %)

구 분	1999년 2/4분기		1999년 3/4분기	
	신 규	폐 쇄	신 규	폐 쇄
어 린 이 집	317 (2.8)	146 (1.3)	301 (2.6)	119 (1.0)
가정보육시설	392 (5.9)	326 (4.9)	296 (4.4)	376 (5.6)

주: ()안은 전분기말 대비 비율임. 2/4분기는 1999년 3월말 현재 어린이집 11,407개소, 가정보육시설 6,690개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3/4분기는 6월말 어린이집 11,575개소, 가정보육시설 6,759개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않았다는 시설장이 56.2%이고, 보육교사는 74.2%이다(표 9 참조).

3) 가정보육시설의 빈번한 개·폐원

취약한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조건은 빈번한 시설 개·폐원의 이유가 된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년 동안 20%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고 또 그 정도의 시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빈번한 개·폐는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1999년 2/4분기의 경우 전분기말에 비하여 2.8%인 317개소의 시설이 새로 생기고, 1.3%에 해당하는 146개의 시설이 폐쇄 신고를 하였으나, 가정보육시설은 5.9%인 392개의 시설이 문을 닫았고, 4.9%인 326개 시설이 새로이 문을 열었다. 3/4분기에도 가정보육시설이 신규시설보다 폐쇄시설이 더 많았다는 점 이외에는 2/4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차이를 보인다.

4) 가정보육시설 행정·지원 체계의 취약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취약하

고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설치 신고시 정원 배정이 외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2000년부터 가정보육시설에도 교재교구비를 연 20만원씩 책정하고 있는 것이 외에는 거의 없으며, 영아전담시설 지원의 경우 서울시의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가정보육시설은 제외되어 있고, 또 가정보육시설의 규모가 적어서 구조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육 관련단체를 통한 지원도 취약하다. 가정보육시설장의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69% 정도 되지만 활용비율은 8.7%에 불과하였고, 조사 대상의 27%가 아무런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4. 가정보육체계 정립방안

가정보육체계의 정립은 가정보육이 소규모이고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보다 따스하게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부모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가정보육도 타시설보육과 마찬가지로 보육정책과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는 공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정보육의 개념 정립

우리 나라의 가정보육은 5~6명을 보육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정보육 수준이고, 12명 내외는 집단가정보육, 그리고 보육아동이 20명이 되고 장소마저 별도의 단독 시설이고 보면 소규모 시설보육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정보육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아동 규모를 10명 미만으로 감축하고 그 이외는 어린이집으로 흡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도 가정집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과도기적으로는 가능하면 보육아동수가 15명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의상 보육아동수 10명 미만을 모형 1, 10~14명을 모형 2, 15명 이상은 모형 3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보육아동의 구성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반을 운영하면서 획일화된 서비스보다는 비정형적이며 아동육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정보육과는 다른 가정탁아를 가정보육모의 개념을 통하여 제도화하여 파출부, 위탁모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가정탁아를 넓은 의미에서 가정보육 안으로 흡수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가정보육시설 인력 관리 강화

우선 가정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2급보육교사 이상이면 경력도 없이 바로 가정보육시설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보육아동수가 14명 이하인 시설의 시설장은 현재와 같이 보육교사 2급 이상으로 하되 보육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야 가정시설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아동수가 15인 이상인 시설의 시설장 자격은 1급보육교사나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자로 1년 이상의 보육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하여야 한다.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는 3년 후에 1급보육교사 자격이 생기므로 15인 이상 가정보육의 시설장이 되려면 최소한 3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보육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급보육교사가 된 자는 10명 이상의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는 보육아동 15인 이상 놀이방은 2급보육교사 양성 교육생의 실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도교사의 자격이 시설장 및 1급보육교사 자격자여야 한다는 지침과도 연결된다. 이와 같은 시설장의 조건은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조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정보육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보육 관계자와의 교류도 없이 폐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도록, 보수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의 확보가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시설과의 협력 방안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3) 가정보육시설 기능의 다양화

가정보육시설이 가정보육의 장점을 살려서 어린이집과 차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차별화된 기능으로 영아보육, 방과후보육 및 시간연장형 특수보육 기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은 규모나 장소면에서 영아를 전담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정보육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인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지적 자극도 병행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의 제공자로서도 적절하다. 그러나 아동특성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영유아와 함께보다는 별도의 보육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방과후 전담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특화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특수보육서비스 제공 희망비율은 높은 데에 비하여 가정보육시설의 특수 보육서비스의 실시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가정보육시설 고유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정보육시설 지원 체계의 강화

현재 우리 나라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제한적이다. 최근에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가 다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기서도 가정보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첫째, 영아 및 방과후 전담시설화의 대상에 가정보육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전담시설 대상에 포함시키고는 있으나 구조적으로 가정보육시설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영아반 2개반 및 상시 방과후 보육아동 15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보육아동수가 5명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완화하여야 하고, 규모가 작아서 월별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분기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두 자녀 보육료 중 일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 가정보육시설 보육료와 정부지원 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가정보육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가정보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신고제에 대한 검토, 평가인증제의 도입, 가정보육모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 11. 가정보육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총괄

구분	가정보육모	가정보육시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보육아동수	1~2명	5~9명	10~14명	15~20명 이하
설치장소	보육모 가정	가정 및 1층에 설치토록 지도하고 상가 등은 배제시킴. 놀이방은 보육 아동수 10명 미만으로 하고, 그 이상인 놀이방은 어린이집으로 흡수		
보육인력 자격	보육교사 유자격자로 1주일의 단기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장은 1년 이상 보육실무 유경험자		시설장 자격을 1급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소지자로 1년 이상의 보육실무 유경험자
보육인력 관리 및 지원	보육정보센터에 등록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받음.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승급과 연계하며, 보수교육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함. 보육교사교육원과 관련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세미나 워크숍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함.		
보육대상	영아 위주의 보육	0~12세를 대상으로 하되, 유아 이외에는 영아전담 및 방과후 전담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연장제 보육을 확대함.		
반편성	-	혼합연령반을 원칙으로 하고, 영아수에 따라서 혼합연령반 또는 연령별반을 탄력적으로 구성		
보육인력 구성 ¹⁾	보육모 1인	시설장 단독 또는 시설장+보조자 1명	시설장과 보육교사 또는 보조자 1명	시설장+보육교사 1명 이상+보조자
운영방식	참조모형이며, 보육정보센터와 연계	인증모형을 채택함(아동 15명 이상인 시설은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이 외에는 희망시설에 한하여 인증함).		
재정지원	-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교재교구비 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함.		

주: 1) 탄력적이되 최소한 기준임.

우리의 가정보육시설은 규모 면에서 어린이집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집과 함께 설치 허가제로 환원하여 보육사업으로의 진입에 문턱을 뚫으로써 보다 전문성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가정탁아, 위탁모 등을 가정보육모로 제도화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가정보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 유자격자가 단기 교육을 받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이 생기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는 보육모 교육, 보육모와 보호자 연결, 보육의 질 관리 등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